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2291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예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20. 1. 7.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39,532,0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532,0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 주었다.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
대출과목	D	E	D
대출번호	F	G	H
대출일자	2018. 11. 19.	2018. 11. 20.	2019. 8. 5.
대출만기일	2020. 11. 19.	2020. 11. 20.	2020. 8. 5.
대출금액	6,000,000원	24,000,000원	24,000,000원
약정이율	11.90%	8.30%	10.50%
연체이율	14.90%	11.30%	13.50%

(2). 그런데 C은 원고에게 약정이자 등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0. 5. 6.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2021. 4. 27. 현재 63,249,248원(= 제1대출원금 5,999,925원 + 제1대출이자 1,213,492원 + 제2대출원금 23,999,995원 + 제2대출이자 3,650,077원 + 제3대출원금 23,999,995원 + 제3대출이자 4,385,764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을 갖고 있다.

	대출원금잔액	이자	원리금합계	이자기산일
제1대출	5,999,925원	1,213,492원	7,213,417원	2021. 4. 27.
제2대출	23,999,995원	3,650,077원	27,650,072원	2021. 4. 27.
제3대출	23,999,995원	4,385,764원	28,385,759원	2021. 4. 27.

(3). 한편 C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는데, 2020. 1. 7.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를 어머니인 피고로 변경(이하 ‘이 사건 계약자 변경’이라 한다)하였다. 2020. 1. 7. 계약자 변경일자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보험이 해약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별지 목록 총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532,036원(= 8,385,422원 + 30,153,699원 + 992,915원)이다.

(4). 이 사건 계약자 변경 당시 C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5,400만 원 상당과 I에 대한 대출금채무 400만 원, J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만 원, K카드에 대한 카드대금채무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번호 있는 것은 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L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2020. 1. 7. 현재 C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5,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자 변경 당시 C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해 주기로 한 약정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C의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게 함으로써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 또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C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2017년 11월경까지 피고가 내고 있어 실제 보험계약자가 피고였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계약자 변경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의 명의변경 이후에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계약자 변경약정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자 변경약정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C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인 2020. 1. 7.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 범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자 변경약정은 위 인정사실 (3).항에서 본 해약환급금 39,532,0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9,532,0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별지

목 록

순번	증권번호	현재 보험계약자	계약일	계약자변경일	총지급금	상품명
1	M	B	2006. 1. 3.	2020. 1. 7.	8,385,422원	P
2	N	B	2005. 7. 26.	2020. 1. 7.	30,153,699원	Q
3	O	B	2005. 7. 26.	2020. 1. 7.	992,915원	Q

